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4. 3. 11.)에 따라 주택밀집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을 조성하였으나

○ 2018년 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의견있음)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 기간(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기금으로 재원확보, 협의매수 등)로 민원요구 사항 있을시 기동성있는 사업추진 가능

○ 주차장, 복지시설등 조성부지의 매입은 시의 재원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감소가 아님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운행지원, 우선구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안 제4조(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는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이용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며,

○ 안 제5조(재정 지원)는 시장이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지원 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로, 경기도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재정 지원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정안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등에도 지원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안 제5조를 삭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는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주관부서인 회계과 검토 결과 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참고자료

○ 제정 조례안 1부.
○ 관련법령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부서의견 조회 결과 1부.
○ 표준조례안 1부.
○ 부서의견 조회 결과 1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하고자 함.

○ 산업단지 복합개발 추진에 따른 조례 완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용도지구 용도제한 정비(제37조, 제43조 등)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 신설(제49조의2)

○ 기타 상위법령과 도시계획조례와 상이한 규정 일치

○ 산업단지 내 용적률 완화 적용시 심의생략 단서 조항 신설

○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건축물 용도완화(단독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등 허용)

3.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29조,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미관(일반, 중심지)지구, 경관지구(자연, 시가지, 수변)를 통합하여 경관지구(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 안 제43조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4조, 제47조를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49조의 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중첩해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하던 사항을,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하단에 단서조문을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내 재생사업(복합용지 개발) 및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율 완화 적용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으로,

○ 복합용지 공모 선정시 산업입지심의회, 공모심사위원회, 재생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시키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범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별표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사업단지내 재생사업(복합용지 개발) 및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업지역 내 허용건축물 용도를 수련시설내 야영장시설, 단독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일반공업지역내 허용용도를 완화하더라도 복합용지외 지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범위와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서조문에 "산업단지로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적 개념이므로 좀더 허용대상을 위 사업에 한해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의견

○ 현행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2(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관련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 절차 이행 과정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358억원)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었고, 이 중 7억여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금이 집행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 그동안 당초,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추진하였던 주차장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유리하고 밀집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고, 또한 노인정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노후주택의 공실 발생 예방 등의 많은 순기능이 있었던 만큼, 관련부서에서도 현 기금의 존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좀 더 폐지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폐지조례안 1부.

○ 관련법령 1부.

신길일반사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도입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미래형 지식기반 4차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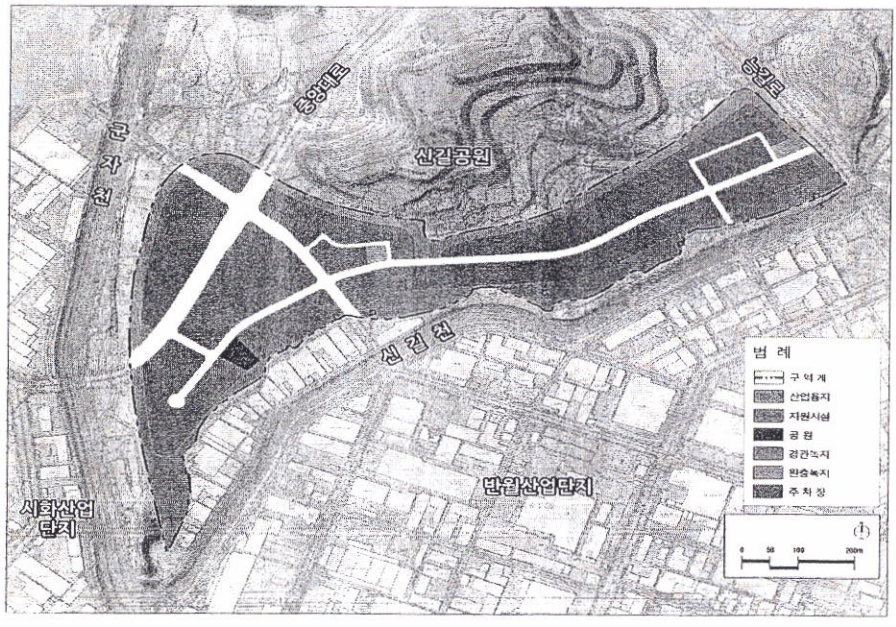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황새바위길(신길동 331-1번지) 일원
○ 사 업 규 모 : 352,765㎡
○ 용 도 지 역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훼손지 복구 : 35,277㎡이상(해제대상지 면적의 10.0% 이상)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3년
○ 추정 사업비 : 1,918억원
(용지비 1,325억원, 조성비 293억원, 부대 등 기타 300억원)
○ 사 입 방 식 : 공영개발방식
○ 사업시행자 : 안산도시공사
○ 근 거 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계획(안)

위치도 : 대외주의

구 분		면적(㎡)	비율(%)	내 역
총 계		352,765	100.0	
1. 유상공급면적		209,413	59.4	
	산업시설	176,243	50.0	중소기업전용단지 포함
	지원시설	30,666	8.7	
	주 차 장	2,504	0.7	노외주차장2개소
2. 무상공급 면적		143,352	40.6	
	공 원	2,488	0.7	
	경관녹지	52,603	14.9	
	완충녹지	36,850	10.4	
	도 로	51,411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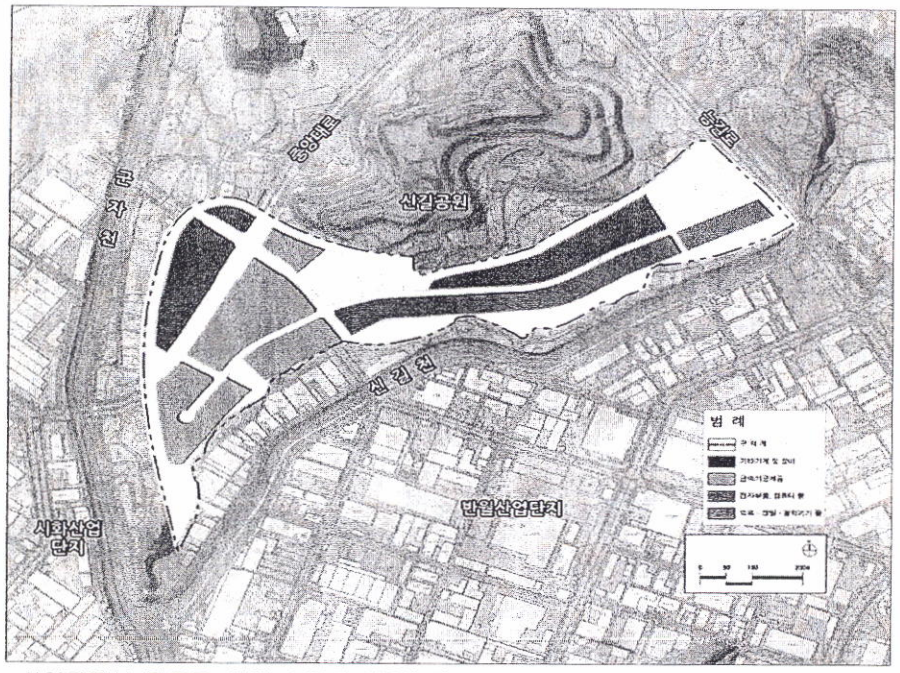


※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립된 계획(안)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업종배치계획(안)

위치도 : 대외주의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76,243	100.0	
금속가공(C25)	73,833	41.9	
전자부품. 컴퓨터(C26)	42,737	24.2	
의료, 정밀(C27)	31,562	17.9	
기타기계 및 장비(C29)	28,111	16.0	



※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립된 계획(안)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성 검토

(1) 수요여건

○ 입주수요분석은 세력권별, 제조업체 수 추정, 기업체 설문 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추정하였음.

※ 2016년 3월~2016년 4월 안산시 인근지역 유치업종 2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중 25개 업체가 입주 의향이 있었음.

○ 산업용지 수요는 신길일반산업단지 계획 산업용지 176,243㎡보다 약 150% 이상 상회 할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산정결과	계획 산업용지 (신길산단)
세력권별 산업용지 신규수요	340,341㎡	176,243㎡
제조업체 수 추정을 통한 산업용지 신규수요	269,669㎡	
기업체 설문을 통한 이전수요	1,573,569㎡	

(2) 공급가격의 경쟁력 수준

○ 인근 산업용지 거래 사례는 350만원/3.3㎡ 내외로 거래되고 있음.

○ 신길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303만원/3.3㎡ ~ 318만원/3.3㎡ 으로 주변 산업단지 분양(매매)가격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공시지가	실거래가	비 고
시화 MTV	-	200~210만원/3.3㎡	- 업종제한 - 입주 심사평가
반월도금단지	100~250만원/3.3㎡	350만원/3.3㎡ 600만원/3/3㎡(건물포함)	거래 없음
반월국가산업단지	100~250만원/3.3㎡	350~370만원/3.3㎡ 600~700만원/3.3㎡ (건물포함)	-
시화산업단지	100~250만원/3.3㎡	350~370만원/3.3㎡ 500~650만원/3.3㎡ (건물포함)	-
테콤단지	220~380만원/3.3㎡	600만원/3.3㎡ (건물포함)	-

□ 사업성 분석

(1) 손익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산업용지 조성원가 분양	산업용지 조성원가 + 적정이윤	비 고
수입 (A)	계	199,150	207,172	
	산 업 시 설	161,407	169,429	
	지 원 시 설	35,106	35,106	
	주 차 장	2,637	2,637	
지출 (사업비) (C)	계	191,785	191,785	
	용지비	132,512	132,512	보상비: 109,599 제세공과금: 9,781 예비비/부대비: 13,132
	조성비	29,273	29,273	기본시설공사비: 20,241 부대공사비: 1,417 조사설계비:3,375 각종부담금: 980 기타: 3,260
	훼손지 복구비용	19,098	19,098	용지비용: 17,000 조경공사비: 1,000 설계비: 98 기타: 1,000
	직접인건비	2,120	2,120	
	판매비	809	809	
	일반관리비	2,427	2,427	
	자본비	5,514	5,514	
	기타비용	32	32	
단 순 손 익(B=A-C)		7,365	15,387	
NPV(순현가)		2,183	8,445	
IRR(내부수익률)		7.88%	15.53%	
PI(할인가격 기준)		1.01	1.05	

※물가 상승률 연 4%, 할인율 5.24%, 차입 이자율 6.24%

(2) 용지별 분양금액

구 분	산업시설 조성원가		산업시설 조성원가 + 이윤	
	적용(원/㎡)	산정기준	적용(원/㎡)	산정기준
산업시설	915,822 (303만원/3.3㎡)	조성원가	961,337 (318만원/3.3㎡)	조성원가+(조성원가 - 자본비용)×5%
지원시설	1,144,777 (378만원/3.3㎡)	조성원가 ×125%	1,144,777 (378만원/3.3㎡)	조성원가×125%
주차장	1,053,195 (348만원/3.3㎡)	조성원가 ×115%	1,053,195 (348만원/3.3㎡)	조성원가×115%

(3) 조성원가

총사업비(백만원)	가처분 면적(㎡)	조성원가(원/㎡)
191,785	209,413	915,822

(4) 연차별 투자 및 공급, 대금회수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투자계획(백만원)	191,785	998	31,950	57,040	64,686	20,352	16,759
회수계획(백만원)	199,150	-	-	48,422	92,027	47,642	11,059
	(207,172)	-	-	(50,829)	(96,037)	(49,249)	(11,059)
투자회수	7,365	-998	-31,950	-8,618	27,341	27,290	-5,700
	(15,387)	(-998)	(-31,950)	(-6,211)	(31,351)	(28,897)	(-5,7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 ) 적정이윤((조성원가 - 자본비용) × 5%)을 고려한 산출금액. 산업시설용지만 적용.

※ 회수 : 산업용지 3년차 30%, 4년차 50%, 5년차 20%
지원시설 4년차 30%, 5년차 40%, 6년차 30%
주 차 장 4년차 30%, 5년차 50%, 6년차 20%

□ 사업방식 : 전면매수(토지수용) 방식의 공영개발 방식

○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 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정.

○ 개발사업 가능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허용.(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 설립, 착공시 까지 민간 출자비율 50%미만이 경우 허용)

□ 타당성 검토결과

(1) 기술적 타당성 : 타당성 있음

○ 기 조성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한 광역 접근성이 우수함.

○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가 용이함.

○ 단지내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이 용이함.

○ 입주 수요 추정결과 추정면적(269,669㎡)이 계획면적(176,243㎡)을 상회하므로 사업성 실현을 위한 적정 규모로 판단되어 기술적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시행이 타당함.

(2) 재무적 타당성 : 타당성 있음

○ 신길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303~318만원/3.3㎡으로 반월도금산단 350만원/3.3㎡, 시화국가산단 350~370만원/3.3㎡ 등의 분양(매매)가격 고려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총 사업비는 191,785백만원이고,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경우 수입은 199,150백만원(적정 이윤 적용 시 207,172백만원)으로, 손익은 7,365백만원(적정 이윤 적용 시 15,387백만원)으로 분석됨.

○ 또한 NPV(순현재가치) 2,183백만원(적정 이윤 적용 시 8,445백만원), PI(수익성지수) 1.01(적정 이윤 적용 시 1.05), IRR(내부수익률) 7.88%(15.53%)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기 분양시 사업수지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시행이 타당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구 분	경제성지수	비 고
NPV(순현재가치)	2,183백만원 (8,445백만원)	(NPV ≥ 0) → 타당성 확보
PI(수익성지수)	1.01 (1.05)	(PI ≥ 1) → 타당성 확보
IRR(내부수익률)	7.88% (15.53)	(IRR ≥ 5.24%) → 타당성 확보

※ ( ) 적정이윤((조성원가 - 자본비용) × 5%)을 고려한 수치.

(3) 정책적 타당성 : 타당성 있음

○ 금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50,414백만원, 16,608백만원, 231명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 시행이 타당함.

☞ 파급효과 분석결과

구 분	투자비(백만원)	유발계수	유발효과(백만원)
생산유발효과	22,658	2.225	50,414
부가가치유발효과		0.733	16,608
고용유발효과		10.2명/10억원	231명

※ 2014년 산업연관표 기준(2016. 06. 16. 한국은행.)

※ 투입비는 조성비 중 기본시설 공사비 20,241백만원, 부대공사비(1,417백만원)와 훼손지 복구비 중 조경공사비(1,000백만원) 반영

□ 종합의견

○ 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의 추진이 적정하며,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충분한 입주수요, 적정한 공급가격으로 사업타당성 확보가 용이하여 공사의 자립경영 기반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함.

□ 향후 추진계획

○ 안산시의회 의결 : 2018.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조사설계 용역 : 2019. 1.
○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 2019. 12.
○ 개발제한구역(G.B)해제 고시 : 2020. 6.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2021. 12.
○ 토지 보상 : 2021. 6.
○ 공사 착공 : 2021. 12.
○ 용지 공급 : 2022. 6.

3. 검토의견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본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볼 때 기술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투자비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231명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차 산업분야 유치에 편중되어 자동화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저해되는 업종이 집중되어 입주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기존 반월스마트허브 구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등을 고려하여 현재 2개소 설치 예정인 노외주차장의 확대등 세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쟁력있고 건실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 참고자료 1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우리 시 환경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 : (안 제2조의2)

○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안 제4조의4)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당초 환경보전기금 설치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지원)",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와,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한 설치목적, 현 기금액이 257억원으로 조성목표

액인 300억원이 2021년말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기금 조성액이 257억원에 이르는 만큼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령 1부.

2019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2019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2) 필 요 성

○ 도시환경과제 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 도약

○ 도시환경 시책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지원 구축

2. 출연기관 일반 현황

(1) 연혁 및 주요사업

<연혁>

○ 2008. 07. 25 : 법인출범

○ 2015. 08. 10 : 안산환경재단으로 명칭변경

<주요사업>

○ 저탄소 환경인증제(부문별 에너지·환경 DB 기반 구축)

○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 정보 허브 구축

○ 안산갈대습지 생태 교육시설 운영 및 정보 시스템 구축

(2) 인력 및 조직 : 현원 18名[정원 20名]

구 분	계(명)		대표이사	가 급 (본부장)	나 급 (부장)	다 급 (차장)	라 급 (과장)	마 급 (대리)	무기계약 (주임)
계	정원	20	1	1	3	5	3	4	3
	현원	18	1	-	2	4	5	4	2
경 영 기 획 팀	현원	5	1				3	1	
생 태 계 서 비 스 팀	현원	6			1	1	1	1	1
도 시 탄 소 관 리 팀	현원	5				2	1	1	1
갈대습지시설관리팀	현원	3			1	1		1	

※ 파견공무원(경영기획팀장 행정6급 1명)

3. 출연금 현황

(1)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2,062,800	2,062,800천원 x 1개소	안산환경재단	※ 예산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2,062,800	1,910,000	152,800	
인건비	안산환경재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06,596	1,365,798	40,798	
사업비	도시 생태계서비스 증진, 도시탄소관리, 갈대습지 통합 수탁운영, 책임경영	656,204	544,202	112,002	
기 타					

(3) 출연금 증액 사유 (전년 대비)

- 직원 호봉 상승분 증액
- 도시 생태계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365 학교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 교육','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미세먼지 대응 보건환경교육'사업비 증액
- 갈대습지 통합 수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

(4) 증액 출연 사업내역

- 찾아가는 365 학교 환경교육 : 강사비 28,000천원
-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 교육 : 운영비 20,000천원
- 생물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 운영비 16,860천원
- 미세먼지 대응 보건환경교육 : 강사비 및 운영비 등 9,150천원
- 갈대습지 통합 수탁운영 : 갈대습지 교육 운영 및 유지 관리비 35,000천원

4. 기대효과

○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체계적인 도시탄소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산갈대습지운영 및 활성화

5. 부서 검토 의견

○ 출연금의 약 70%가 인력운영비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19년도 신규 사업은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최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출연금 운영 계획에 의거 출연금 지원이 요구됨.

6. 검토의견

○ 2019년도 출연금은 2,062,800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8%(152,800천원) 증액되었고,

○ 그중 1,406,596천원이 인건비로 약68%를 차지하고 2018년도 대비 40,7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656,204천원이 도시 탄소관리 등 사업비로 약32%를 차지하고 2018년도 대비 112,002천원이 증액됨.

○ 인건비 증가분은 재직 직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액 사유로 판단되나, 증액 출연 사업은 갈대습지 통합 수탁운영 등으로 총112,002천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융자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융자 출연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7조(재정지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사업)

※ 경기도 일반택시 장기운수종사자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임 (경기도 택시정책과 - 1867)

(2) 필 요 성

- 택시 총량제로 2015년도부터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앙양과 개인택시 전환 유도를 위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함.

2. 출연기관 일반 현황

(1) 연혁 및 주요사업 : 2018년도 신규사업

- 추진목표 : 15명
- 방법 : 2018년 지원 대상자에 사후 출연 방식으로 2019년도 출연
  . 출연금 : 1인 8,000천원 / 대출금액 : 80,000천원 (출연금의 10배)
- 추진체계

안산시	⇒	경기신용보증재단	⇒	협력은행(농협)
· 기금출연 · 이차지원(30%도비)		· 보증범위 조회 · 융자 보증		· 대출 · 이차보전 청구

(2) 인력 및 조직

- 경기신용보증재단(2개 부문, 4개 본부, 20개 지점, 9개 출장소)

3. 출연금 현황

(1)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120,000	80,000,000원 × 15명 ÷ 10	경기신용보증재단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사업비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농협, KEB하나은행)이 상호 MOU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안산시가 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 기금이 되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 협력은행이 대출해주는 구조	120,000	-	120,000	

(3) 출연금 증액 사유 (전년 대비)

○ 해당 없음

(4) 증액 출연 사업내역

○ 해당 없음

4. 기대효과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친절 서비스 제고

5. 부서 검토 의견

○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창원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 경기도에서도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시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15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 실행하고 익년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임.

○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취지는 합당하나, 일반택시 운수종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융자금 대출 지원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제1항에 명시된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에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2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국도47호선을 확장하면서 농로(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 농로(부체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국도47호선 배수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도로구역 내 농로개설이 어려워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농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임.

○ 또한, 국민권위위원회에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간에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후 농로 포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 국도47호선 배수로 정비(농로포장 병행)공사를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 인근 농경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 현황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79-7번지 외7개소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기부채납 대상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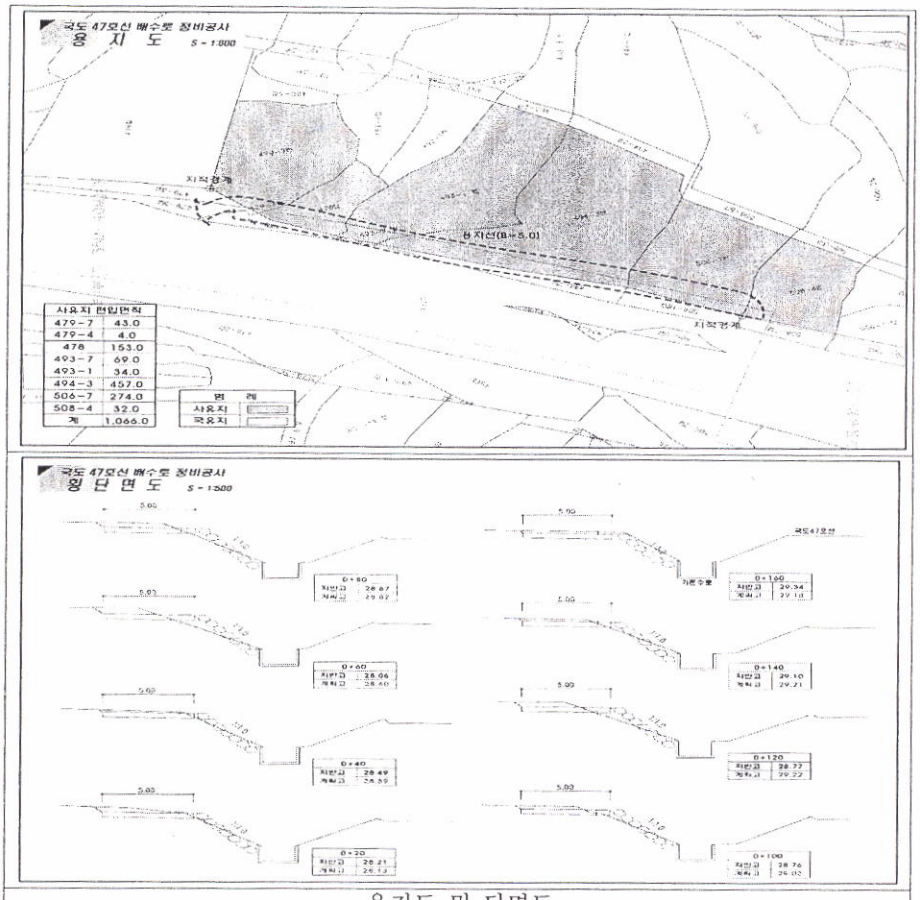
번호	위　치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	기부가액
1	사사동 479-7	전	이**	1,214㎡	43㎡	230,000원/㎡	9,890,000원
2	사사동 479-4	답	이**	4㎡	4㎡	34,600원/㎡	138,400원

번호	위 치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	기부가액
3	사사동 478	답	김**	407㎡	153㎡	206,300원/㎡	31,563,900원
4	사사동 493-7	답	장**	69㎡	69㎡	75,900원/㎡	5,237,100원
5	사사동 493-1	전	장**	1,542㎡	34㎡	230,000원/㎡	7,820,000원
6	사사동 494-3	전	아** 외1인	2,318㎡	457㎡	225,400원/㎡	103,007,800원
7	사사동 506-7	전	박**	1,355㎡	274㎡	230,000원/㎡	63,020,000원
8	사사동 508-4	답	이**	780㎡	32㎡	230,000원/㎡	7,360,000원
	계			7,689㎡	1,066㎡		228,037,200원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998년~2000년 : 국도47호선 4차로→6차로로 확장(서울국토관리청)
- 2016. 4. 25. : 진정서(배수로 복개 및 농로 확보)
- 2016. 5. 2. : 진정민원회신
  ※ 배수로 복개 후 농로개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허가 될 수 있음.
- 2016. 3. 31. : 도로점용허가 신청
- 2016. 4. 5. : 도로점용허가 신청 회신(불허가)
  ※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대처가 불가능하여 배수로 복개 불가
- 2017. 6. 19. : 탄원서 제출(국민권익위원회)
- 2017. 7. 12. : 고충민원 설명자료 제출(건설행정과→국민권익위원회)
- 2017. 7. 26. : 도로점용허가신청
- 2017. 7. 28. : 취하원 제출
- 2017. 8. 30. : 고충민원 합의사항 이행 협조(국민권익위원회→건설행정과)
  ※ 토지주 폭5m 기부채납할 경우 우리구에서 콘크리트 포장 시행하는 조건임.
- 2018. 1. : 본예산 확보(2억원)
- 2018.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2. : 현황측량
- 2018. 3. : 주민설명회 실시
  ※ 협의사항 : 이00외 5인 소유 편입토지에 대하여 안산시로 기부채납
- 2018. 8. : 종합검토보고
- 2018. 9. : 사유지 토지분할 동의서 제출
- 2018. 9. : 공유재산 취득 심의(건설행정과→회계과)
- 2018.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8. 11.: 토지의 분할 허가 신청(건설행정과→도시계획과)
- 2018. 11.: 토지 분할 신청(건설행정과→민원봉사과)
- 2018. 12.: 기부채납(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2019. 1. ~ 4. : 공사착공 및 준공

○ 도면 및 현장사진



용지도 및 단면도



현장사진(안산→군포)



현장사진(군포→안산)

3. 검토의견

○ 국도47호선 확장에 따른 농로(부채도로)의 부재로 인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8개 필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 시행된 국도47호선 확장에 따라 경작지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농지로의 진입을 위한 농로 개설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농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농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에 의하여 합의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항으로

○ 영농불편 해소 및 배수로 설치를 통해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확보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